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부동산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협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을 정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제2조제3호나목”을 “제2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2(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허가 등 지원

제19조의2(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 또는 인가·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지원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① (생략)	제2조(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5. ----- 제2조제1항 제3호나목----- -----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조정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3장의2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허가 등 지원

제19조의2(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가·허가 등 관계 법령의 해석 또는 인가·허가 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지원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법 제22조의2제2

<신 설>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연 락 처	(044) 201 - 3414